수원시 공고 제2026-243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3차)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3차) 공고합니다.

○ 정정사항 → 1 page 규모 3,737세대 추가, 1,2page 공사기간(시작일) 수정
→ 13page 자기평가표 양식 수정, 5page 재무상태 비율 24년도 기준 적용

2026. 11. 02.

수 원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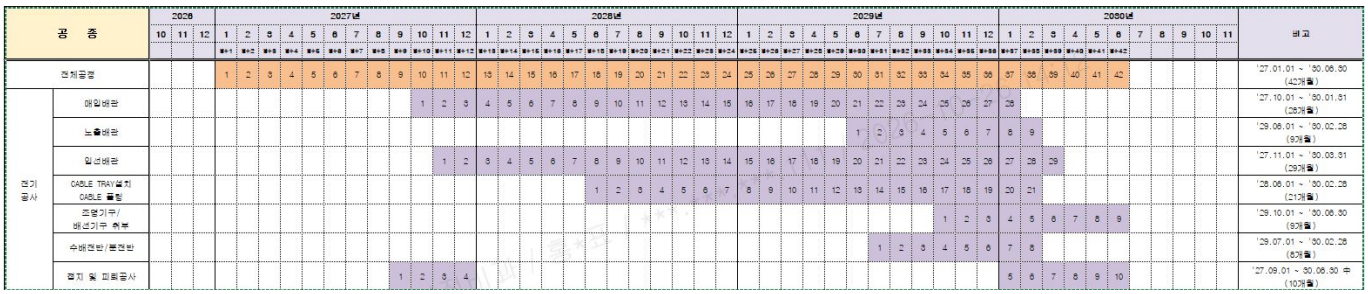
1. 공고기간 : 2026. 10. 27.(화) ~ 11. 03.(화)(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석우, ☏ 031-235-4050)
다. 시 공 사 : 지에스건설㈜ (대표 허윤홍, ☏ 02-2005-1114) IPARK 현대산업개발(주)(대표 : 정경구) (02-2008-9114)
라. 설 계 자 :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문홍길/채희/이승준, ☏ 02-2140-4400)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89번길 일원
○ 대 지 면 적 : 169,569.70㎡(사업면적: 222,842.80㎡)
○ 연 면 적 : 714,633.33㎡
○ 규 모 : 아파트 29개동(지하2층, 지상35층) - 세대수 3,737세대 / 부대복리시설
○ 전체공사기간 : 2027.01.01. ~ 2030.06.30. (42개월) ※ 전기 공사기간 : 2027.09.01. ~ 2030.06.30.(34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1.05.03.(사업시행변경인가일: 2026.10.26.)
※ 추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리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산 예정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1,500,265,482천원
○ 총공사비 : 1,492,172,312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감리대상 전기공사비: **84,639,337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전기)",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전기)", "(예정)공정표"는 '별도 자료' 파일 참조
사. 감리대가 및 기초금액
○ 감리대가 : **3,319,824천원** (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기초금액 : **3,220,229천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의함)

가. 전기 공사기간(총 34개월) : 2027.09.01. ~ 2030.06.30.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접수 개시(마감)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1. 4.(수) 10:00 ~ 2026. 11. 06.(금) 12:00 까지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 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 나라장터「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당해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

가. 일　시 : 2026. 11. 06.(금) 14:00 이후

나. 방　법 :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적격심사 평가기준표(별첨_참고자료2)의 낙찰하한률 참조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입찰결과 우선순위(1~5순위)업체에 대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유선상담 등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1. 09.(월) 10:00 ~ 2026. 11. 11.(수) 18:00[근무시간(중식제외)에 한함]

나. 장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도시정비과

1) 예비순위(1~5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아래 내용이 포함된 열람용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감리업자(전기)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3)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6.(월) 18:00 [근무시간(중식제외)에 한함]

나. 장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도시정비과 (7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함)

2)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전화, 인터넷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다른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세부평가내역 열람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서류사진 촬영 및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

마. 유의사항

1)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원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 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는 가능)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이 되지 않음을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배치(계획)확인서 제출 시 인정)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①감리업자모집공고 ⇒ ②전자입찰서 제출 ⇒ ③개찰 ⇒ ④예비 1~5순위 선정 및 발표 ⇒ ⑤사실확인서류 제출 ⇒ ⑥열람 및 이의신청 ⇒ ⑦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⑧감리자 선정(통보)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2025.12.18.) 및 동 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이후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결과 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조의3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제10조의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업자로 처분 될 수 있습니다.

6) 선순위 업체가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합니다.

8)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42.39%**

나. 평균 유동 비율: **125.42%**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 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 신청서 제출 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유의사항(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작성 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서약서[별첨3]

5)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7)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9)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10)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1)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등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 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 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합니다.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합니다.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①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합니다.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②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③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④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⑤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기재 시 탈락 처리

5) 상기 "11-가(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항"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상기 "11-가(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항"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8)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모집공고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 시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①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④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지역가산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바.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 하여야 합니다.

과업 수행계획 \ 구분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10쪽 이상	10쪽 미만	5쪽 미만			-

작업기법 \ 구분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2쪽 이상	2쪽 미만	-			-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차.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를 선정 합니다.

타.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파.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합니다.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따릅니다.
(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 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공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수원시청 도시정비과(☏031-5191-3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총공사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사비 구성 현황표 및 공사 예정공정표 각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선정 신청서

〔사업명 :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2026년 월 일

(감리회사명)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계업자	대표자		상 호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요 소		배 점	신청인	수원시	비 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감리원 (성 명)	(1) 등급	-			
			(2) 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감리원 (성 명)	(1) 등급	-			
			(2) 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감리원 (성 명)	(1) 등급	2			
			(2) 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 감리업체	4			
			(2) 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자본비율	1.0			
			(2) 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1 -5	가. 지 역		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다. 부실벌점		-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 .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 . 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신청인 : (인)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h>평점</th><th>평가</th></tr>
<tr><td colspan="2">1. 참여감리원</td><td>5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가. 책 임
감리원</td><td></td><td>[25]</td><td></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1) 등 급</td><td>(-)</td><td>○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td></tr>
<tr><td>(2)경력 및 실 적</td><td>(25)</td><td>○ 배점기준
<table>
<tr><th>규 모</th><th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h></tr>
<tr><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td></tr>
<tr><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1,200세대이상</td><td>15년이상</td><td>15년미만
12년이상</td><td>12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td></tr>
<tr><td>점 수</td><td>25</td><td>22</td><td>19</td><td>16</td><td>13</td></tr>
</table>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table>
<tr><td>규모</td><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200세대이상</td></tr>
<tr><td>년수</td><td>2년</td><td>3년</td><td>4년</td></tr>
</table></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td><td>(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td><td></td><td></td></tr>
<tr><td rowspan="3">나. 보 조
감리원</td><td></td><td>[14]</td><td></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1) 등 급</td><td>(-)</td><td>○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td></tr>
<tr><td>(2) 경력 및 실적</td><td>(14)</td><td>○ 배점기준
<table>
<tr><th>규 모</th><th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h></tr>
<tr><td rowspan="2">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 colspan="2">3년이상</td><td colspan="2">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
<tr><td colspan="2">14</td><td colspan="2">12</td><td>10</td></tr>
<tr><td>1,200세대이상</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점 수</td><td>14</td><td>12</td><td>10</td><td>8</td></tr>
</table>
※ 보조감리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td><td>(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td><td></td><td></td></tr>
<tr><td rowspan="3">다. 비상주
감리원</td><td></td><td>[11]</td><td></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1) 등 급</td><td>(2)</td><td>○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td></tr>
<tr><td>(2) 경력 및 실적</td><td>(9)</td><td>○ 배점기준
<table>
<tr><td>경 력</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점 수</td><td>9</td><td>7</td><td>5</td><td>3</td></tr>
</table>
※ [부포 3-1] 제1호라목의 환산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td><td>(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td><td></td><td></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2. 유사용역
수행실적</td><td><u>[10]</u></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감리업체
실 적</td><td>-</td><td>(10)</td><td>○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정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d>규 모</td><td colspan="5">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td></tr>
<tr><td>1,200세대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64이상</td><td>64미만
48이상</td><td>48미만
32이상</td><td>32미만</td></tr>
<tr><td>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
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td></tr>
<tr><td>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td><td>12이상</td><td>12미만
9이상</td><td>9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연면적 : ㎡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td><td></td><td></td></tr>
<tr><td colspan="2">3. 신용도</td><td><u>[10]</u></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가. 입찰
참가
제한
、
영업
정지</td><td>(1) 감리
업체</td><td>(4)</td><td>○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d></td><td></td></tr>
<tr><td>(2) 참여
감리원</td><td>(3)</td><td>○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산출근거</td><td>(1) 감리업체 :</td><td></td><td></td></tr>
<tr><td>(2) 참여감리원 :</td><td></td><td></td></tr>
<tr><td rowspan="3">나. 재정
상태
건실도</td><td>(1) 자본
비율</td><td>(1.0)</td><td>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table>
<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
<tr><td>점 수</td><td>1.0</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
</table></td><td></td><td></td></tr>
<tr><td>(2) 유동
비율</td><td>(2.0)</td><td>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table>
<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
<tr><td>점 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0.8</td></tr>
</table></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산출근거</td><td>(1) 자본비율 :</td><td></td><td></td></tr>
<tr><td>(2) 유동비율 :</td><td></td><td></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td><td><u>[10]</u></td><td colspan="3"></td></tr>
<tr><td>가. 개발 실적</td><td>-</td><td>(4)</td><td colspan="3">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table>
<tr><td>구 분</td><td>5년이하</td><td>5년초과
10년이하</td><td>10년초과
20년이하</td></tr>
<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r><td>전력신기술</td><td>100%</td><td>80%</td><td>-</td></tr>
</table>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td><td>-</td><td>(4)</td><td colspan="3">○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table>
<tr><td>구 분</td><td>3%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
<tr><td>점 수</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
</table></td></tr>
<tr><td>다. 교육 실적</td><td>-</td><td>(2)</td><td colspan="3">○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td></tr>
<tr><td rowspan="4"></td><td rowspan="4">산출근거</td><td rowspan="4"></td><td colspan="3">가. 기술개발실적 :</td></tr>
<tr><td colspan="3">나. 기술개발투자실적 :</td></tr>
<tr><td rowspan="2">다. 교육실적 :</td><td>- 2주이상 :</td><td></td><td></td></tr>
<tr><td>- 1주이상 :</td><td></td><td></td></tr>
<tr><td colspan="2">5. 업무중첩도</td><td><u>[10]</u></td><td colspan="3"></td></tr>
<tr><td>가.상 주 감리원</td><td>-</td><td>(6)</td><td colspan="3">○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table>
<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
<tr><td>점 수</td><td>4</td><td>2</td></tr>
</table>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td></tr>
<tr><td>나.비상주 감리원</td><td>-</td><td>(4)</td><td colspan="3">○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table>
<tr><td>구 분</td><td>6개소미만</td><td>6개소</td><td>7개소</td><td>8개소</td><td>9개소이상</td></tr>
<tr><td>점 수</td><td>4</td><td>3</td><td>2</td><td>1</td><td>0</td></tr>
</table>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 rowspan="2"></td><td rowspan="2">산출근거</td><td rowspan="2"></td><td colspan="3">가. 상 주 감 리 원 :</td></tr>
<tr><td colspan="3">나. 비상주감리원 :</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6. 교체빈도</td><td><u>[5]</u></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가. 감리업체

나. 참 여 감리원</td><td>-</td><td>(2.5)</td><td>○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교체빈도 (%)</td><td>10%미만</td><td>10%이상 20%미만</td><td>20%이상 30%미만</td><td>30%이상</td></tr><tr><td>점 수</td><td>2.5</td><td>2</td><td>1.5</td><td>0</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2.5)</td><td>○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td><td></td><td></td></tr>
<tr><td rowspan="2">산출근거</td><td>가. 감리업체 :</td><td></td><td></td></tr>
<tr><td>나. 참여감리원 :</td><td></td><td></td></tr>
<tr><td colspan="2">7. 작업계획 및 기 법</td><td><u>[5]</u></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가. 과 업 수행계획

나. 작업 기법</td><td>-</td><td>(3)</td><td>○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
과업 수행계획</td><td colspan="5">제 출</td><td>미제출</td></tr><tr><td></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td></tr><tr><td>점 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2)</td><td>○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
작업기법</td><td colspan="5">제 출</td><td>미제출</td></tr><tr><td></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td></tr><tr><td>점 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table></td><td></td><td></td></tr>
<tr><td rowspan="2">산출근거</td><td>가. 과업수행계획 :</td><td></td><td></td></tr>
<tr><td>나. 작 업 기 법 :</td><td></td><td></td></tr>
<tr><td colspan="2">8. 가점 및 감점</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가.가점</td><td>(1) 지 역</td><td>(1.5)</td><td>○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td><td></td><td></td></tr>
<tr><td>(4)책 임 감리원</td><td>(1)</td><td>○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td><td></td><td></td></tr>
<tr><td rowspan="2">산출근거</td><td>(1) 지 역 :</td><td></td><td></td></tr>
<tr><td>(4) 책임감리원 : (자격명)</td><td></td><td></td></tr>
<tr><td rowspan="2">나. 감점</td><td>부실벌점</td><td>(-5)</td><td>○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부실벌점 :</td><td></td><td></td></tr>
</table>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 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업체에 한함)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전기공사기간 :

| 구분 | 성명 | 등급 | 투입일자 | | |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 수	평점	평가
	용 역 명	감리기간					
책임감리원							
	소 계				일 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 수	평점	평가
	용 역 명	감리기간					
보조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							
	소 계				일 년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용 역 명	감리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 산 연면적 (㎡)	평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 3]

감리업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전력시설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 및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및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 중 과다하게 계산된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감리업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 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업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세부평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 0800

【참고자료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 위한 점수	
800세대 미만	30	70	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2.95%**
1,200세대 미만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200세대 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